

국토교통부지침 제200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목 차 -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2
제4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탑승)	3
제5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자격기준)	4
제6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5
제6조의2(교육과정운영 등)	5
제7조(무기 등 운영)	6
제8조(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	6
제9조(행정)	7
제10조(유효기간)	9
부칙	9
[별지 제1호서식] 현행범인체포서	12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13
[별지 제3호서식] 진술서	14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신청서	15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서	16
[별지 제6호서식]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17
[별지 제7호서식] 범인 처리결과 통보	18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무기 중 분사기 및 전자총격기를 말한다.
2. “최소폭발물위험위치(LRBL : Least-risk bomb location)”란 폭탄(Bomb) 또는 폭발장치(Explosive device)가 폭발하는 경우 항공기 상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최소폭발물위험위치의 정보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된다.
3. “관계기관”이란 국가정보원(공항보안실),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및 경찰청(도착공항 경찰관서)을 말한다.
4. “동·하계”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시즌별 운항스케줄을 시작하는 매년 10월 및 3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말한다.
5.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

내보안요원과 **객실승무원**을 말한다.

6. “항공기내의 불법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7. “위협수준”이란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심각성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 가. 1단계 - 수상한 행동이나 구두로 위협하는 방해 행위
 - 나. 2단계 - 육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
 - 다. 3단계 -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
 - 라. 4단계 - 조종실에 침범하거나 침범을 시도하는 행위 등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불법행위 발생시 위협수준에 따른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적정수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위협의 정도가 심한 항공기 또는 항공노선에 대하여는 평시보다 항공기내보안요원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하며, 추가 탑승 인원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

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
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
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
6. 객실 내 폭발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 절차에 따른 수행
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 ①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안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② 항공기내보안요원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객실 내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을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

며,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기 내 주변 승객에게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객실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⑥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자 및 항공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물리적으로 신체를 속박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원본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피체포자와 함께 인계하고 그 사본을 사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⑧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기밀을 엄수하여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자격기준) 항공기내보안요원은 2년 이상의 선임객실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 경력을 갖춘 자로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된 자이어야 하며,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협수준에 따른 현실적 시나리오 및 훈련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대응, 경찰인계 절차 및 구금기법
2. 비무장 공격 및 방어 기술
3. 불안·초조 등 이상행동 행위자를 식별·인터뷰 및 집중 감시하는 절차
4. 탑재된 무기의 사용방법 등 무기훈련
5.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6. 최소폭발물위험위치 인지,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 항공기 성능 및 객실장비 등 일반적 교육
7.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8. 운항승무원과 항공기내보안요원간 객실 내 상황 또는 관련 정보의 신중한 전달 방법 또는 방식 등

제6조의2(교육과정운영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과정을 초기·정기 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론교육 및 실습훈련으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테러정세 및 국제위협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기교육은 실습훈련을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초기교육을 받은 사람은 매 12개월마다 2시간 이상의 실습훈련과 이상승객 감시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5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 제22조에 따른 객실승무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요건은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지명된 객실승무원 중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테러정세 및 국가대테러활동체계 등 필요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은 교육을 받아야 할 날자가 속한 월과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에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무기 등 운영)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무기와 수갑 및 포승줄(올가미형) 등을 필요시 사용가능하도록 지급 및 탑재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수갑·포승줄 등을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 객실내 위협수준에 따라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기·수갑·포승줄 등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 ①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폭행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위계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

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구금 이후에도 고성·폭언 등 위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추가 조치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불법행위 승객을 인계하여야 한다.

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제4항에 따라 불법행위 승객을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녹화자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또는 승무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이 피해·목격내용에 대하여 추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홀수 월 첫 번째 주 금요일까지 이전 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불법행위 발생현황·처리결과 및 국가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별제 제7호 서식의 범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한 명단, 제6조의2에 따른 초기·정기교육 실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무기의 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지정 신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는 무기의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하계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 제출

2. 무기반입 허가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하계마다 무기 반입자, 반입사유, 종류 및 일련번호(내림차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을 할 경우 동 요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 무기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을 완료한 후 항공기 이륙전에 「항공보안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 안내방송을 이용하여 기내에서 사전에 안내(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방송 문구는 소속 항공기내 **보안요원(운항·객실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형사상 처벌대상임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흡연·전자기기 사용·**승무원 업무 방해 및 탈출구·기기 등의 조작 행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기내에 구비된 승객브리핑카드(안전정보카드)에 **포함시키고, 추가적으로 일반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해양부 지침 제3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내보안요원 정기교육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항공기내보안요원 정기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내보안요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항공기내보안요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5호, 2015.5.22)은 폐지한다.

제3조(승객브리핑카드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6항에 따라 승객 브리핑카드(안전정보카드)를 비치해야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지침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부 칙(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16호, 2015.7.1)은 폐지한다.

부 칙(2017.3.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 정기교육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정기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기 등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승줄(올가미형)의 지급 및 기내 탑재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성명	()
	생년월일	. . .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 항공기내보안요원 (인)		
체포한일시		
체포한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사유		
체포자의관직 및성명		
인치한일시		
인치한장소		
구금한일시		
구금한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m²)

확 인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세)

주 거 :

본인은 20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확인인 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 . .

항공운송사업자(항공)

항공기내보안요원 인

[별지 제3호서식]

진 술 서 (간이공통)			
성 명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20 . . .			
작성자			
㉠			

210mm×297mm(백상지 80g/m²)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신청서		
신청자	항공운송사업자 명	
	항공운송사업자 주소지	
<p>위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 항공기내 보안요원이 「항공보안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무기(□ 전자총격기 □ 분사기)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가고자 아래와 같이 지정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항공운송사업자(항공) 성명 인</p>		
항공기내보안요원 임명자		
성명(성별)	직급 및 승무원신분 식별번호	지정신청 기간
		<input type="checkbox"/> 하계 <input type="checkbox"/> 동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서		
항공운송사업자 명		
항공운송사업자 주소지		
<p>귀 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항공기내 보안요원이 무기(<input type="checkbox"/> 전자총격기 <input type="checkbox"/> 분사기)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항공청장</p>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자		
성명(성별)	직급 및 승무원신분증 인식번호	지정 기간
		<input type="checkbox"/> 하계 <input type="checkbox"/> 동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1. 기내 불법행위 총괄 현황

(단위 : 건)

구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타	소계
1월 (2014년)									
12월 (2022년)									
합계									

2. 경찰관서 인계현황

(단위 : 건)

구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타	소계
1월 (2014년)									
12월 (2022년)									
합계									

3. 경찰관서 인계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타	소계
1월 (2014년)									
12월 (2022년)									
합계									

* 1, 2, 3 양식은 연도별로도 작성

4. 기내 불법행위 세부내용

항공사	년/월/일	국제/국내	노선	불법행위 세부내용	항공사 조치결과	경찰 조치결과

[별지 제7호서식]

범인 처리결과 통보

통보양식

사건번호	사건일시	장소	피해자	피의자	범죄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